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40
------------	------

발의연월일 : 2016. 12. 13.

발의자 : 김진태 · 여상규 · 황영철
염동열 · 박명재 · 이종명
권성동 · 정갑윤 · 성일종
오신환 · 전희경 의원
(11인)

제안이유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한편, 피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 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해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를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로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제13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가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다.

3. 피부착명령자가 제2호의 소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2.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의 죄	----- 제7조(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및 제8조(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 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

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신 설>

행한다.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 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가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 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신 설>

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다.

<신 설>

3. 피부착명령자가 제2호의 소
환에 불응한 경우 보호관찰
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
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피
부착명령자를 구인할 수 있
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